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 -

심 사 보 고 서

| | |
|------------|-----|
| 의 안 번 호 | 786 |
|------------|-----|

2012년 6월 2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6월 4일, 채재선 의원 외 15명 발의
- 나. 회부일자 : 2012년 6월 7일
- 다. 상정일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교통위원회(2012년 6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채재선 의원)

- 가. 제안이유
 - 최근 보험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휴대폰 통화를 하거나 DMB를 시청하는 등의 운전 중 주의분산 행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25%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DMB 시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운전자의 DMB 시청을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 이런 점에서 운전 중 DMB 시청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함으로써 운전자의 DMB 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시켜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시 벌칙 조항을 둠으로써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있음

그러나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해서는 시청금지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바, 운전 중 DMB 시청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조항 근거를 마련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함

다. 이송처

- 국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정부 :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안석수)

가. 개요

- 동 건의안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 중 DMB 시청 금지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156조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의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와 마찬가지로 운전 중 DMB 시청도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56조에서 DMB 시청에 대해서는 처벌의 예외를 둬으로써 DMB 시청 금지 조항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참고 사항 :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

| |
|--|
| <p>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⑩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11.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p> <p>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料料)에 처한다.</p> <p>1. …… 제49조(……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p> |
|--|

- 이에 대해 경찰청은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해서 3만원~7만원 사이의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1), 서울시도

대형 교통사고 예방측면에서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²⁾.

- 2010년말 현재 차량 탑재용으로 팔린 지상파 DMB 단말기의 경우 약 880만대에 이르고 있고, 휴대폰용 DMB 단말기도 3천만대에 달하고 있는 바³⁾ 운전중 DMB 시청에 따른 사고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됨

이런 점에서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 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은 교통안전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5월 8일, MBC TV 등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보도

2) 교통정책과-12059(2012.6.20)

3) 한국전파진흥협회, 2010년 4분기 DMB 단말기 판매동향 참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의 휴대폰 사용 및 DMB 시청 등이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 및 DMB 시청을 금지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달리 DMB 시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에 따르면 2010년말 차량 탑재용으로 팔린 지상파 DMB 단말기가 880만대에 이르고,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DMB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운전자가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운전 중 DMB 시청에 따른 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에는 DMB를 시청하던 운전자의 부주의로 3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렇게 운전 중 DMB 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대형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운전자의 DMB 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저감시키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2.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